

## 별첨: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 관련 규정

### <별첨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요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b>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b></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b>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b>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li> <li>2.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li> <li>3.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li> <li>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li> </ol>	<p><b>제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b></p> <p>①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이 경우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별로 <b>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감독기준 이상</b>이어야 한다.</li> <li>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b>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b>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이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i> <li>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출 것</li> </ol> <p>② 법제14조제5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인가 받은 자, 그밖에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p>

<별첨 2> 사용자의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b>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가입자에 관한 사항</li> <li>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li> <li>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li> <li>5.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li> <li>7. 생략</li> <li>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b>가입자에게 통지</b> 되어야 한다.</li> <li>9-10. 생략</li> <li>11. 그밖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b>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b></li> </ol>	<p><b>제10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b>                      법 제1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li> <li>2. <b>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b></li> </ol>
<p><b>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li> <li>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li> <li>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li> <li>4. 적립금운용방법 및 <b>정보의 제공</b>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반기 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b>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b></li> <li>5-6. 생략</li> <li>7. 그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운영을 위하여 <b>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b></li> </ol>	<p><b>제12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b>                      법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b>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b></li> </ol>

<별첨 3> 사용자의 교육 실시 의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 data-bbox="347 413 563 442"><b>제19조(사용자의 책무)</b></p> <p data-bbox="234 450 673 668">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 data-bbox="234 678 312 707">② 생략</p>	<p data-bbox="710 413 1109 442"><b>제18조(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b></p> <p data-bbox="679 450 1141 556">법제1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 data-bbox="679 566 1141 629">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p> <p data-bbox="679 639 1112 668">가.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p> <p data-bbox="679 678 1141 741">나.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p> <p data-bbox="679 751 993 780">다.예상급부액 대비 적립액 규모</p> <p data-bbox="679 790 1141 853">라.가입자의 전직, 이직시의 처리절차, 퇴직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p> <p data-bbox="679 863 1141 927">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p> <p data-bbox="679 937 1141 1000">가.사용자의 부담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p> <p data-bbox="679 1010 1141 1074">나.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p> <p data-bbox="679 1083 1141 1147">다.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p> <p data-bbox="679 1157 1141 1221">라.가입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p>

<별첨 4> 사용자 책무와 감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b>제19조(사용자의 책무)</b></p> <p>① 생략</p> <p>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1.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2.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b>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b></p>	<p><b>제19조(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b></p> <p>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b>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b>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b>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b>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b>제22조(사용자에 대한 감독)</b></p> <p>①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b>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b></p> <p>②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b></p>	

<별첨 5>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및 감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b></p> <p>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법, 이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 제1항, 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li> <li>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li> <li>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li> <li>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대통령이 정하는 행위</b></li> </ol> <p>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li> <li>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li> <li>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li> <li>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li> </ol> <p>④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b></p> <p>법제20조제2항제4호에서 <b>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b>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li> <li>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li> </ol>

<p>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생략</p>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p> <p>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④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b>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b>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b>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b>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 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감위감독)</p> <p>①법제23조제4항에서 <b>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b>라함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p> <p>②법제23조제4항에서 <b>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b>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p> <p>1.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p> <p>2.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p> <p>3.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p> <p>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별첨 6>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사업자 감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b></p> <p>①노동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b>대통령령이 정하는</b> 바에 따라 <b>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b>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b>대통령령이 정하는</b>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5조(권한의 위탁·위임)</b></p> <p>①법 제 3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b>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b>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법제14조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li> <li>2.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이전명령</li> <li>3.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li> <li>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li> <li>5.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설정</li> <li>6.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요건설정</li> </ol> <p>② <b>금융감독위원회</b>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한다.</p> <p>1-4. 생략</p> <p>④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금융감독위원회</b>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b>금융감독원장</b>에게 위탁한다.</p>

<별첨 7> 퇴직연금 감독규정상의 퇴직연금사업자 책무관련 규정

감독규정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와 관련된 규정내용
<p>약관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제17조)</p>	<p>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약관 등)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li> <li>2. 퇴직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li> <li>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4.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li> </ol>
<p>심사기준 등 (제18조)</p>	<p>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li> <li>2. 법제2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li> <li>3.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li> <li>4.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이전시키는 내용</li> <li>5.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li> <li>6. 기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li> </ol>
<p>약관 등의 변경명령 (제19조)</p>	<p>①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20조)</p>	<p>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p>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첨 8> 퇴직연금사업자의 정보공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p data-bbox="303 415 605 442"><b>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b></p> <p data-bbox="237 452 670 591">① - ⑥ : 생략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b>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b> 공시하여야 한다.</p>	<p data-bbox="760 415 1061 442"><b>제21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b></p> <p data-bbox="679 452 1142 552">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ol data-bbox="679 566 1142 823" style="list-style-type: none"> <li>1.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li> <li>2.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여부 등)</li> <li>3.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li> <li>4.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li> <li>5.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li> </ol> <p data-bbox="679 832 1142 896">②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p> <p data-bbox="679 909 1142 1045">③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p>

<별첨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연금계리업무전문인력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b>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b></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p> <p>2.보험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p> <p>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p> <p>4.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p> <p>5.그밖에 제1호 내지 제4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p>	<p><b>제6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b></p> <p>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생략</p> <p>2.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이 경우 법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3. 생략</p>
<p><b>제15조(운영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b></p> <p>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운영관리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한다</p> <p>1.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운용 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p> <p>2.연금제도설계 및 연금계리</p> <p>3.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p> <p>4.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b>제7조(운영관리업무의 일부수행)</b></p> <p>①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는 동조 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업무로 한다.</p> <p>②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법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p> <p>2. 생략</p>

<별첨 10>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p><b>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b></p> <p>① - ③ : 생략</p> <p>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중략)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b>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검사</b>하게 할 수 있다.</p> <p>⑤:생략</p>	<p><b>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b></p> <p>①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해당 <b>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반영</b>할 수 있다.</p>

<별첨 11> 퇴직연금사업자의 보고의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p><b>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b></p> <p>① - ⑤ : 생략</p> <p>⑥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를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b>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b>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b>1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b>할 수 있다</p> <p>⑦ : 생략</p>	<p><b>제15조(약관제정 및 변경보고)</b></p> <p>① 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b>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b></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 후 10 영업일 이내에 <b>금감위에 보고</b>할 수 있다</p> <p>가.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p> <p>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p> <p><b>제16조(표준약관)</b></p> <p>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금융협회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변경할 수 있다.</p> <p>② 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b>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감위에 보고</b>하여야 한다</p> <p><b>제19조(약관 등의 변경명령)</b></p>

	<p>①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법령 및 이 <b>규정에 위반</b>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b>변경된 약관 등을 금감위에 보고</b>하여야 한다</p>
<p>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p> <p>① - ② : 생략</p> <p>③ :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b>보고를 명할 수 있다.</b></p>	

<별첨 12>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재조치 규정

위반행위	법 규정	제재조치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의 사업장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	제32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 연금 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제1항	1천만원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제20조 제2항 제1호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제20조 제2항 제2호	
퇴직연금사업자가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경우	제20조 제2항 제3호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 제2항 제4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을 경우	제20조 제3항 제1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였을 경우	제20조 제3항 제2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였을 경우	제20조 제3항 제3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였을 경우	제20조 제3항 제4호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20조 제4항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제19조 제2항 제1호	5백만원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9조 제2항 제2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20조 제1항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20조 제5항	